

제 316 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023. 2. 28.

복지정책실

순서

I	일반현황	5
II	정책비전 및 목표	8
III	주요업무 보고	11
IV	서면 보고(각 부서별)	33
V	보고 안건(민간위탁, 전용, 예비비, 법정계획)	81

I. 일반 현황

1 조직 및 인력 ('23. 1월말 기준)

□ 조 직 : 1기획관, 7과 1반 35팀, 2출연기관



※ 출연기관(2)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인 력 : 정원 175명 / 현원 181명

('23. 1월말 기준)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계	175 / 181	166 / 169	6 / 7	1 / 3	2 / 2
복지정책과 (실국장 포함)	37 / 41	37 / 39	-	0 / 2	-
안심소득추진과	11 / 9	11 / 9	-	-	-
안심돌봄복지과	26 / 25	26 / 25	-	-	-
어르신복지과	27 / 26	26 / 25		1 / 1	-
어르신시설추진반	8 / 9	4 / 3	4 / 6		
장애인복지정책과	23 / 24	21 / 23	1 / 0	-	1 / 1
장애인자립지원과	25 / 27	24 / 26	1 / 1	-	-
자활지원과	18 / 20	17 / 19	-	-	1 / 1

□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복지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훈 및 재해구호, 독립유공자 및 보훈 관련 수당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의료급여사업 제도 및 기금 운영,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인 인허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안심소득추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총괄 · 안심소득 시범사업 세부 모델안 마련 및 사업 모니터링 ·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안심돌봄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SOS센터 운영(추진실행위원회, 업무매뉴얼 제작, 대시민 홍보 등) · 찾아가는 복지 운영,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예방사업, 민간자원 발굴, 푸드뱅크 운영지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어르신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 지원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어르신 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기초연금 운영, 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독거어르신 IoT 사업 · 장기요양보험제도, 좋은돌봄인증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돌봄가족 지원 · 시립장사시설 유지관리,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지원, 공영장례서비스
어르신시설추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증축 · 시립 공공실버타운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노인복지관(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포함) 건립 지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물 안전관리, 노인복지시설 중대재해 관련 업무
장애인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지원(평생교육센터 등), 뇌병변 장애인 지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전환(탈시설) 지원사업, 장애인지원주택 및 자립생활 주택 운영 지원 · 장애인 인권증진사업 및 교육,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모니터링 등
장애인자립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확충,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장애인 의료재활·체육시설 운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주간보호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 쉼터 운영
자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노숙인 보호, 일자리·의료·주거·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 ·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 조건부 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저소득 자산형성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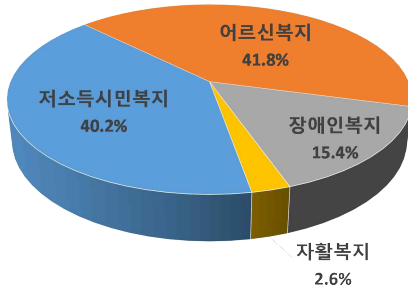
2 예 산

□ 예산현액 : 9조 9,200억원

('23.1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전년대비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증감액	증감률
계	9,591,099	9,897,740	9,897,740	9,919,991	306,641	3.2%
일반회계	7,836,944	7,982,978	7,982,978	8,005,229	146,034	1.9%
사업비	6,631,489	6,961,138	6,961,138	6,983,390	329,649	5.0%
재무활동	1,204,931	1,021,218	1,021,218	1,021,218	△183,713	△15.2%
행정운영경비	523	621	621	621	98	1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1	1,912,895	1,912,895	1,912,895	160,605	9.2%
사업비	1,752,180	1,912,783	1,912,783	1,912,783	160,603	9.2%
행정운영경비	0	112	112	112	112	순증
사업비	111	0	0	0	△111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1,865	1,866	1,866	1,866	1	0.1%
사업비	1,865	1,866	1,866	1,866	1	0.1%

< 분야별 정책사업비 > 총 199개 사업 8조 8,980억원 (특별회계 포함)



구 분	예산현액(백만원)	비율
합 계	8,898,039	100.0%
저소득시민복지	3,576,660	40.2%
어르신복지	3,715,252	41.8%
장애인복지	1,373,211	15.4%
자활복지	232,916	2.6%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제외

□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현황 : 4개 계정 84,359백만원

('23.1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말 조성액 ①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말 조성액 ⑤=①+④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총 계	81,866	67,744	65,251	2,493	84,359	
사 복지 기 회 지 금	소 계	41,611	5,216	8,626	△3,410	38,201
	노인복지계정	12,368	861	309	552	12,920
	장애인복지계정	20,983	3,154	7,441	△4,287	16,696
	자활계정	8,260	1,201	876	325	8,58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0,255	62,528	56,625	5,902	46,157	

※ 수입액 :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지출액 :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 제외)

II. 정책비전 및 목표

비전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리는 미래복지 서울

목표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심복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동행복지



전략
및
과제

- **서울 안심소득 확대**
 - 지원범위 및 가구수 확대로 안정적 미래복지모델 선도
 - 미래 소득보장 국제공론장 마련
- **위기가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찾동 개편, 돌봄SOS서비스로 위기가구 복지수요 대응강화
 - 기관 간 협력, 민관 협력 통한 관계망 형성, 돌봄체계 지원
- **스마트 복지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안심 복지 체계 구축
- **서울형 복지제도 강화**
 - 서울형 긴급복지 및 기초보장제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 청년 맞춤형 복지 추진**
 - 가족돌봄 청년, 청년 유공자지원 등 새로운 청년 복지 수요 대응
 - 청년동행센터 운영 활성화
 - 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장애인보호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 버스무료요금 시행, 수도요금 지원
 - 보자기 등 지원, 보호수당 확대
- **균형 있는 장애인 생활 지원**
 - 시설거주 장애인 생활환경 보장
 - 지역거주 장애인 정착 지원
 - 장애인일자리,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참여, 지역서비스 강화
- **초고령 사회 대비 어르신 지원**
 -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돌봄·여가 시설인프라 확충
 - 어르신 일자리 확대
- **노숙인·쪽방주민 지원**
 -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 정책지표

분 야	지 표 명	2021	2022	2023	2024
저 소 득 위 기 가 구	돌봄SOS서비스 제공 (명)	33,156	33,500	33,500	34,000
	지역밀착형 복지관 운영 (개소)	25	55	72	9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22,170	20,841	21,000	21,500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명)	87	200	300	400
어 르 신	공공요양시설(실버케어센터) 건립 (개소)	36	38	38	39
	어 르 신 공 공 일 자 리 (개)	73,895	76,135	75,830	80,000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수(개소)	192	216	226	290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인원 (명)	29,031	31,000	32,500	34,000
장 애 인	장 애 인 일 자 리 제 공 (개)	6,936	7,155	7,611	7,800
	장 애 인 지 원 주 택 공 급 (호)	158	228	298	390
	장 애 인 활 동 지 원 서 비 스 (명)	22,832	24,098	24,500	25,000

※ 복지대상자 및 시설현황('22.12월 말 기준)

○ 복지 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가 초 수 급 자	국민기초	318,127	370,226	403,311	413,055
	서울기초	4,712	5,452	6,737	6,170
어 르 신 (서울인구수 대비 비율)	1,478,664 (15.20%)	1,561,139 (16.1%)	1,597,447 (16.8%)	1,658,207 (17.6%)	
장 애 인	394,843	394,190	392,123	391,859	
노 숙 인 (거리 및 시설노숙인 현황)	3,374	3,870	3,365	3,151	
쪽방거주자	3,085	2,874	2,483	2,400	

○ 시 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소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 인	장 애 인	노숙인	자활지원	푸드마켓	
계	시 설 수	7,312	99	6,476	621	47	31	38
	종 사 자 수	91,021	1,967	80,798	7,089	647	410	110
이용시설	시 설 수	5,046	99	4,499	365	14	31	38
	종 사 자 수	18,402	1,967	11,027	4,718	170	410	110
생활시설	시 설 수	2,266	0	1,977	256	33	0	0
	종 사 자 수	72,619	0	69,771	2,371	477	0	0

Ⅲ. 주요업무 보고 목록

1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13
2	위가취약가구 보호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 확대	15
3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추진	17
4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개편추진	19
5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개선	21
6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22
7	서울형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23
8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4
9	장애인의 일상생활 생계비 경감 지원	25
10	정립전자 관리방안	26
11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28
12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확대·개선	30
13	거리노숙인 등 무료급식 지원기준	32

1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송수성 ☎7312 담당 : 김미진 ☎7317
 생활보장팀장 : 박미영 ☎7336 담당 : 이선민 ☎7340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어르신정책팀장 : 손선희 ☎7403 담당 : 이왕기 ☎7409

□ 추진배경

-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료 등 에너지 요금 급등
 - 전년 동월 대비 '23년 1월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 34.0%, 전기료 29.5% 인상
- 유례없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생계 및 시설 운영비 부담 가중

□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내용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등

- (대상)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 시설
 -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등 3개 실국 소관 35개 유형, 937개소
- (기준) 3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하되, 시설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
 - 월별 최저 1백만원(1,500㎡ 미만 이용시설)에서 최대 10백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시설규모 (연면적 기준)		1,500㎡만	2,000㎡만	2,500㎡만	3,000㎡만	3,500㎡만	4,500㎡만	5,500㎡만	6,500㎡만	6,500㎡이상
월별 지원액	이용 시설	1,0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2,500천원	3,000천원	3,500천원	4,000천원	4,500천원	5,000천원
	생활 시설	2,000천원	3,000천원	4,000천원	5,000천원	6,000천원	7,000천원	8,000천원	9,000천원	10,000천원

- 기타 12개 시설 유형은 시설 이용 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3개월 분 정액(30~60만원)지원
 - (복지정책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보조기기센터, 피해장애인 쉼터, 단기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상담소,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긴급보호 쉼터
 - (시민건강국)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시설
- (소요예산) 시 예비비 총 35억원

기초생활수급 가구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23.1.26. 기준))
- (기준)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
- (지급방법)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단위로 현금 계좌 입금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지급 가능
- (소요예산)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03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

- (내용) 市-구청장협의회 협의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 추가 지원
- (대상)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5만 5천 가구
- (기준)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
- (시기) '23.2.20.限
- (소요예산) 자치구비 55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 (대상) 냉난방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대상 경로당('23.1월 기준 1,458개소)
- (기준) 월 148천원('23년 월별 단가 370천원의 40%)을 5개월간 추가 지원
- (소요예산) 특별교부금 11억원

□ 향후일정

- 특별지원 대상 외 시설 난방비 추가 지원 검토 : '23년 중
 - 국고보조시설 등의 난방비 집행에 따른 비용 부족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

2 위기·취약가구 보호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 확대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생활보장팀장 : 박미영 ☎7336 담당 : 이선민 ☎7340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 ☎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 안재동 ☎7386 담당 : 최지은 ☎7393

서울형 긴급복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요건은 미충족하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국가형 긴급복지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구 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지원항목별 현금 및 물품 지원(가구 단위) * 생계지원은 年 최대 2회
 - (생계지원) 62만원(1인) ~ 162만원(4인) (의료·주거지원) 각각 최대 100만원
 - (기타지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등
- 사업예산('23) : 12,9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총 20,841건, 9,269백만원 지원(집행률 77.2%)
 - 생계지원 : 11,463건(3,503백만원), 의료지원 : 6,779건(4,734백만원)
 - 주거지원 : 1,885건(906백만원), 기타지원(전기요금 등) : 714건(125백만원)

'23년 주요 개선사항

-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생계지원' 단가 인상 **확대**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162만원 (4인 초과시 가구원수 비례 금액 증가)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종료에 따라 소득·재산 평시 기준 완화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85%→100%, 재산기준: 310→409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중위소득65%→100%

□ 향후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 실적점검 : 월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47%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지원액(최소~최대)	103,895 ~311,684	172,808 ~518,423	221,741 ~665,223	270,048 ~810,145	316,534 ~949,603	361,399~ 1,084,197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5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6백만원 이하
- 사업예산('23) : 14,519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지원현황 : 4,782가구 6,170명 / 14,888백만원(집행률 94.3%)
- 대상자 적극발굴을 위한 동시신청 및 직권조사 등 행정절차 개선
 - 국민기초 수급 신청시 서울형 기초 동시신청 의무화 1,498가구 1,991명 신규 발굴
 - 국민기초 탈락·중지 직권조사 실시로 823가구 1,076명 신규 발굴

'23년 주요 개선사항

-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액 인상 **확대**
 - 소득수준 중위소득 46% → 47% 상향, 생계급여액 4인기준 5.47% 인상('23년 1월)
- 3인이상 다인가구 유입 촉진을 위한 재산기준 완화 **확대**
 - 재산기준 155백만원 → 최대 254백만원 상향(주거용 재산 99백만원 공제 신설) ('23년 4월)
- 자녀가 있는 가구의 금융재산 특례신설, 근로가구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공제를 상향 **확대**
 - 자녀 1인당 금융재산 1천만원 공제 특례, 소득공제를 30% → 40% 상향('23년 4월)

□ 향후일정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자격 확인 조사(연1회) : '23.10월~12월

3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안심소득추진과장 : 노수임 ☎2133-8424 안심소득사업팀장 : 임미희 ☎8431 담당 : 최경희 ☎8433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지원 범위 및 가구 수 2배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 포용성 강화 및 정책 실험의 유효성·타당성 제고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326백만원 이하
- 지원규모 :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1,100가구 ※ 비교 2,200가구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50~85% 이하 600가구
- 지원금액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23년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 지원기간 : ’23. 7월 ~ ’25. 6월(2년) ※ 연구분석 : ’23 ~ ’26(4년)
- ’23년 예산 : 14,711백만원
 - 서 울 시 : 1,266백만원 (국제포럼 480백만원, 2단계 모집 346백만원 등)
 - 복지재단 : 13,445백만원 (급여 11,362백만원, 설문조사 등 1,499백만원, 콜센터 3억원 등)

□ 추진실적

1단계 추진 ’22. 6월 최종 500가구(비교 1,023) 선정, 7월부터 급여 지급

- ’22년 안심소득 급여지원 : 총 484가구 / 2,817백만원(집행률 93.9%)
- ’22. 5월 참여가구 대상 기초선 조사, ’23. 1월 현재 중간조사(1차) 실시 중

2단계 착수 '23. 2월 현재 참여가구 모집, 총 76,051가구 지원 신청

- 모집기간 : '23. 1. 25.(수) ~ 2. 10.(금)
- 모집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전용 콜센터 접수 대행 병행
 - 온라인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내 접수시스템 구축·운영
 - 콜센터 : 인터넷 등에 친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전화 접수 대행
- 접수 및 선정 : 접수 76,051가구, 선정 1,100가구(경쟁률 69.1:1)

구 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가구	
		접수	최종선정	접수	최종선정	접수	최종선정	접수	최종선정
계	76,051	32,452	440	17,024	315	12,913	178	13,662	167
39세 이하	22,948	14,768	132	3,664	95	2,501	53	2,015	51
40-64세	39,351	12,343	220	8,174	156	8,315	90	10,519	84
65세 이상	13,752	5,341	88	5,186	64	2,097	35	1,128	32

['23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범위 확대 ('22년) 중위소득 50% 이하 → ('23년) 중위소득 85% 이하
- 지원가구 확대 (당 초) 총 800가구 → (확 대) 1,600가구 (2배수 ↑)

※ 3년간 총 1,600가구 지원 (비교집단 3,200가구)

- '22년 1단계('22. 7월~, 3년간) : 중위 50% 이하 500가구 (기 추진 중)
- '23년 2단계('23. 7월~, 2년간) : 중위 50% 이하 500가구(순증) + 중위 50~85% 600가구 (300가구 확대)

□ 향후일정

- 참여가구(지원·비교가구) 선정 : '23. 2 ~ 6월
 - '22년 상반기 1단계 선정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3차례 무작위 선정
 - 공정한 선발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 5인 이상(복지·경제·통계 분야 전문가 및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등)



- 참여가구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 체결 : '23. 7월
- 2단계 첫 급여 지급 : '23. 7. 11(예정)

4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개편추진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 ☎2133-7370 복지사업팀장 : 최원환 ☎7379 담당 : 이병구 ☎7384

'15년부터 추진해왔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복지·건강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빈곤·돌봄 위기가구를 집중·선별 방문·지원 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 중심으로 개편
- 65·70세, 출산·양육가정 보편방문을 빈곤·위기가구 집중방문으로 전환

현행	복지, 건강, 여성, 마을, 자치, 행정	보편방문	개편	복지, 건강	선별방문 집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70세 도래 어르신 ▶ 출산·양육가정 ▶ 빈곤·돌봄 위기가구 			▶ 빈곤·돌봄 위기가구	

□ 추진계획

① 빈곤·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간편 신청·신속 지원」 추진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입수 확대로 촘촘한 발굴·방문 추진
 -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확대(34종→44종), 조사거부자 집중조사 및 관리
 - ▶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연 6회), 고독사 위험군 조사('21년 조사거부자 등 12만명)
 - 고시원·다세대 등 거주지 여건, 연령 등 고려한 구동별 자체지표 추가설정
- 업무 칸막이 제거로 복지담당 공무원 누구나, 신속한 통합상담 역량 구축
 - 동 복지담당 전직원을 복지상담전문관으로 운영, 신속한 대민상담·지원
 - 洞 공무원의 종합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 신설



- 긴급한 지원·돌봄 서비스 요청 위기가구 대상 先지원·後검증 정착
 - 서울형 긴급복지(생계비), 돌봄SOS서비스(일시재가 등) 등 최초 1회 선지원

②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 돌봄SOS 서비스(10대 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및 돌봄 대상 확대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22년) 중위소득 85%기준 → ('23년) 중위소득 100%이하
 - 부분유료화 등 지원조건(연령, 소득 등) 추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돌봄매니저(간호직) 특화업무 발굴 및 예방적 돌봄기능 강화
 - 돌봄 수요자에 대한 건강면접조사, 만성질환, 낙상예방 교육 등 추진
 - 장기·중증도 대상자는 찾동 방문간호사를 통한 지속 건강관리 연계

③ 민·관 협력을 통한 동단위 복지역량 강화 및 상시 돌봄 확대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과 협업, 동단위 복지활동 및 문제해결 역량 집중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확대 : ('22년) 21개구 55개소 → ('23년) 24개구 72개소
 - 복지관과 동주민센터 1개소 이상 매칭·협력, 위기가구 지원 확대
- 지원 거부가구·복합적 위기가구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관리 강화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모색
 - ▶ 지원거부 가구 '사회도약 참여비' 지원(200가구, 가구당 20만원)
- 시민 접점기관, 지역주민 인적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모니터링 추진
 - 「시-동(洞)-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위기징후 신고
 - ▶ 우정사업본부(집배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협회(검침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 지역내 생활업종종사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한 모니터링 확대

□ 향후일정

-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 추진 : '23. 3월

5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개선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 ☎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 안재동 ☎7386 담당 : 최다영 ☎7378

고독사 위험가구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2월 (12개월)
-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주 1회 이상 전화·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전체 우리동네돌봄단 역할)
 - 산책·취미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 70개동 필수)
- 참여대상 : 만 40~67세 서울시 거주 주민 ※ '22 보람일자리 사업 기준 준용
- 활동정원 : 1,200명 ※ 활동 현원('23.1월말 기준) : 25개구 380동 1,142명
- 사업예산 : 5,878백만원

〈 주요 지적사항('22.11.21, 제315회 정례회(예산심의)) 〉

- ◆ 돌봄단 인건비 증액 편성과 관련 모집시 역할 명시, 평가표 등 만들어서 사업 추진 필요
- ◆ 활동수당 인상 등에 따라 돌봄단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차별성 있게 운영

□ 주요 추진(개선)사항

- 고독사 위험가구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돌봄단 연중(12월) 운영
 - 1분기부터 활동함으로써 관리사각기간 예방 ※ '22년 : 9개월 관리(4~12월)
- 안부확인 요령·사례, 일지 작성 등 포괄한 실무매뉴얼 기반 활동 및 교육 강화
 - 매뉴얼 제작('22.12월) 및 배포 완료, 분기 필수 교육(市·복지재단 2회, 자치구 2회) 예정
- 역량 있는 참여자 모집 및 활동을 위한 돌봄단 처우 개선
 - (기존) 月 220천원 → (변경) 月 396천원 [세전, 기본 300천원 + 96천원(급량비 12회)]

□ 향후일정

- 우리동네돌봄단 교육 및 정기적 안부 확인 등 사업 운영 : '23.1~12월
- '23년 돌봄단 표창 수여 및 사례공유회 : '23.12월 (시청 다목적홀 예정)

6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 ☎ 2133-7370 민간자원팀장 : 이성화 ☎ 7395 담당 : 김지수 ☎ 7398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조정과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신설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으로 효율성 강화
- 추진방향
 - 푸드뱅크·마켓 경력 우선 반영
 - 종사자수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을 고려하여 직급 조정
 - 복지포인트 및 휴가제도 신설

〈 주요 지적사항('22.11.7, 행정사무감사)〉

- ◆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대해 형평성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푸드뱅크·마켓 종사자가 동일직급으로 편성되어있음
- ◆ 임금체계 개편 및 직급조정 등 처우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 개선사항

- 종사자 직급 조정
 - 직급조정 : 5급→ 4급 / 승진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인원: 최대 2명(기초푸드뱅크·마켓 별)
 - ※ 자격기준: 푸드뱅크·마켓 경력 9년이상, 총 경력 12년 이상(사회복지시설 경력 포함)
- 복지포인트 신설
 -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400천원),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300천원)
 - ※ 부여기준 시점 : 2023. 1.1.기준 호봉 / 사용기간; 2023.1.16.~12.1.
- 종사자 휴가제도 신설
 - 장기근속 휴가 신설: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유급휴가)
 - 자녀돌봄휴가: 연2일(유급/연중실시)

□ 추진사항

- 기초푸드뱅크·마켓 처우개선 시행 : '23. 1월

7 서울형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어르신시설확충팀장 : 노동영 ☎9525 담당 : 박기범 ☎9526

증가하는 어르신 장기요양 수요에 맞춰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서울형 안심돌봄가정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돌봄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업예산 : 2,934백만원(293백만원×10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요양, 급식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정원 : 5인~9인)

□ 추진계획('23년)

- 사업주체 : 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 추진목표 : 10개소
- 확충방법 : 안심돌봄가정 운영모델(유닛구조) 도입하여 신규시설 확충
 - ※ 유닛구조 : 공용공간 중심의 공간 배치로,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 조성
 - 공공건물 등 활용형 : 기존 동청사 및 경로당, 공공 공간, 기부채납, 구유지 등
 - 노인복지관 등 병설형 :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 건물 임대형 : 공동주택, 빌라, 상가, 종교시설 등 민간 건물 임대
- 지원내용 :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Two-Track으로 진행
 - 개보수(리모델링) : 시비 100%(최대 293백만원,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 신축·증축('24~) : 국시비 매칭, 시비 확대 지원(국비확보액 275% 內 지원)

□ 향후일정

-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대상 공모 및 선정 : '23.3~4월
- 설계 및 공사 시행 : '23.5~10월
- 안심돌봄가정 운영 : '23.11월~

8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 조수민 ☎7414 담당 : 이성주 ☎9534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년기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를 통한 활력있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량 : 75,830개(자치구 74,610개 / 시 직속 1,220개, 복지부 확정내시 기준)
- ('22년 대비) 사회서비스형 2,078↑, 시장형 1,251↑, 취업알선형 500↑, 공익활동 4,134↓
- 수행기관 : 226개 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 담당인력 : 수행기관별 배치 노인일자리 담당자 533명(1년 기간제)
- 사업예산('23) : 187,011백만원(국비 85,505, 시비 101,506)

□ 추진실적('22년)

- 어르신 일자리 누적 참여자 수 : 총 88,043명 ※ '22년 목표 76,135개
-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으로 공공기관 어르신일자리 206개 신규 운영
- 시니어승강기안전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시니어연금가이드(국민연금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지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 노인일자리담당자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30만원(1인당) 최초 지급(시비)
- 중랑시니어클럽 개관 및 운영 개시('22. 11월)

'23년 주요 개선사항

- 어르신일자리 사회서비스형·시장형 확대 추진 **확대**
- ('22) 사회서비스형 6,324개, 시장형 4,798개 ⇒ ('23) 사회서비스형 8,402개, 시장형 6,049개
- 어르신일자리담당자 인건비 상향 및 배치기준 완화 **확대**
- 인건비 월 1,976천원 ⇒ 월 2,011천원 / 담당자 1명당 참여 어르신 수 감소
- 배치기준 : (공익활동형의 경우) 담당자 1명당 관리 어르신 수 150명 ⇒ 140명
- 시니어클럽(현재 19개소 운영) 신규 개소 추진 **확대**
- (중구) '23년 하반기 개관 예정 / (용산구) '24년 개관 예정

□ 향후일정

- 2022년 사업 수행기관 평가 : '23.3월 ~ 6월

9

장애인의 일상생활 생계비 경감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 ☎2133-7440 권익보장팀장 : 엄기숙 ☎7360 담당 : 원경희 ☎7365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 ☎7442 담당 : 이순한 ☎7364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보조기기 임대료 등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저소득층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대상 전동보장구 2~3개 부위 수리비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임대지원 : 4개(동남, 서남, 동북, 서북) 보조기기센터 운영
 - 보조기기 상담·평가, 대여 및 현장적용, 후원연계, 맞춤제작 등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3~64세 배뇨조절 곤란 장애인
 - 1회용 기저귀 구입비 지원 ※ '23년부터 깔개매트까지 확대

□ 추진실적('22년)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3,439명, 299백만원
- 보조기기 임대 : 9,419명, 440백만원 ※ 보조기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21.12월)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1,483명, 411백만원

'23년 주요 개선사항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시비 250백만원, 구비 250백만원) **신규**
- 보조기기 임대료 무상지원(보증금 50% 경감), 의류 리폼 서비스 지원(연 3벌) **신규**

□ 추진계획('23년)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저소득층(5,750명), 연 10만원(구비 포함 30만원)
-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신규) : 전체이용자(12,801명), 대인·대물 20백만원
- 이용료 경감을 통한 보조기기 이용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임대료 경감 : 기기 가액의 10% → 무상 / 보증금 경감 : 기기 가액의 10% → 5%
 - 장애 특성별 의류 리폼(신규) : 1인당 연 3벌(최대 400명 1,200벌)
-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및 깔개매트 지원
 - 월간 이용 물품 및 금액 확인 후 개인별 통장에 입금조치(월 5만원 한도)

10 정립전자 관리방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 ☎2133-7470 장애인일자리팀장 : 강윤경 ☎7453 담당 : 박진수 ☎9614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근로장애인 임금체불 등 민원 발생 , 법인의 시설운영 개선조치 및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시설개요

- 소재지 : 광진구 워커히로 93(구의2동), 시설면적 7,507㎡
- 시설유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 신고일 1998. 1. 14.
- 이용자 : 근로장애인 26명(정원 200명) / 시설종사자 13명('23.2.6. 현재)
※ 비장애근로인 3명 별도
- 운영법인 : (사복)한국소아마비협회 ※ 대표 박근상, 시설장 공석
- 주생산품 : LED조명류, CCTV 전자부품 등 임가공
- 예산지원('23. 2월 현재) : 240백만원(전액시비, 종사자 인건바운영비 1분기 지원)

〈 주요 지적사항 ('22.11.7, 행정사무감사)〉

- ◆ 소아마비협회가 운영중인 정립전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심 바람

□ 주요 추진(개선)사항

-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전자) 경영컨설팅(장애인복지정책과) : '22.9월
 - 기업 운영을 지속할수록 적자를 내는 구조임 ※ 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법인 '대표이사' 선임 : '22.12.20
 - 김정희 이사장 해임 및 박근상(건국대 교수) 이사 선임
 - '정립전자' 폐업 결정('22.12.20.) ※ '23.6월 폐지 예정
 - ▶ 소아마비협회 '22년 6차 법인 이사회 의결

- 정립전자 폐업에 대한 공고와 ‘직원협의회’ 및 전직원 회의 개최: '22. 12. 26
 - 대표이사가 직접 폐업의 상황을 안내하고 직원 협조 요청(6회)
 - 폐업공고 안내문 정립전자 건물 내 게시('22.12.26.)
- 법인 재무 건전화를 위한 계획 및 재정 관리방안 마련중 : '23.1월~
 - 정립전자 재무구조 및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 및 부채해결과 법인 재정건전화 등
- 근로장애인 임금체불 일부 지급 : '23. 2월중
 - '22.11월분까지 임금 지급완료, '22.12~'23.1월 2개월분 임금체불
 - ※ '22.12월 미지급 임금은 '23.2.24까지 지급 예정임

□ 향후일정

- 정립전자 폐업 계획서 제출(법인 → 광진구) : '23.2월 말
 - ※ 단, 법인이 시설운명을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구청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정립전자 종사자 이직 및 희망퇴직 등 협의 : '23.3월~6월

11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유선숙 ☎7492 담당 : 조재형 ☎7498

노숙인 등에게 자존감 회복 및 정서적 함양의 기회 제공을 위해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숙인 등 자존감 회복 및 정신적 빈곤 탈피를 위해 정서적 지원
- 교육 대상 : 노숙인 및 저소득시민 관련시설 이용(생활)인 중 희망자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재활·요양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등 73개소
- 수행 기관 : 노숙인 등 시설, 대학 등 공모 추진 ※ 민간협력 사업 발굴 및 연계
- 교육 장소 : 노숙인 및 저소득시민 등 관련시설, 대학 등 수행기관 내
- 운영 기간 : '23. 3월 ~ 12월
- 과정 구성

구 분	희망과정	특 강	행복과정
규 모	250명	200명(대학별 100명)	120명(2개 대학)
장 소	시설 자체	대 학 및 특정장소	대 학

※ 특강은 희망과정 기간 중 대학 대강당 등 활용, 행복과정 수행기관에서 운영

- 사업예산('23) : 750백만원 (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운영실적 : 총 384명 참여 / 303명 수료(수료율 79%)
- 12개 노숙인시설 및 1개 대학 참여

(단위 : 명)

연도	입학 인원			수료 인원			참여시설(참여기관 수)
	소계	노숙인	저소득	소계	노숙인	저소득	
계	384	373	11	303	292	11	
기본과정	256	256	-	219	219	-	양평쉼터 등 (노숙인시설 12개)
심화과정	128	117	11	84	73	11	서울시립대

- 주요 강의내용 : 기본강의, 체험학습, 참여형 강의, 졸업여행 등



○ 강의 만족도 조사, 관계자 간담회, '23년 사전 수요조사 실시

- (만족도) 실생활과 관련성 높은 과목 개설 및 다채로운 체험학습 발굴 요구
 - ※ 채무재테크 관련 과목 수요, 자기표현 강의 같은 다양한 체험학습 요구
- (간담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실정에 맞게 사업기간 설정 필요
- (수요조사) 간식 지원, 심리 프로그램 지원 등 희망

'23년 주요 개선사항

- **인문학 프로그램 산출물에 대한 전시회 등 개최** **신규**
 - 산출물 전시로 자아 성취감 및 자존감 향상 기회 제공, 수료식과 병행
- **인문학 참여대상자 등 확대** **확대**
 - (기존)노숙인+쪽방주민 등 320명 → (확대)노숙인+쪽방주민+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참여자) 등 370명
 - (기존) 1개 대학 → (확대) 2개 대학
- **인문학 운영프로그램 범위 확대** **확대**
 - (기존)철학, 문학, 역사 등 강의 → (확대) 예술, 심리, 경제, 동아리, 자격증 등 과정 지원

□ 향후일정

- 인문학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공모 실시 : '23.2월
- 인문학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3.2월
- 인문학 프로그램 합동 입학식 개최 : '23.3월
- 인문학 프로그램 과정 운영 : '23.3월~12월
 - 인문학 프로그램 특강 운영 : '23.5월/10월

12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확대·개선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지원팀장 : 기재일 ☎7489 담당 : 이신옥 ☎7491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22.10.6.)에 따라 쪽방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추진 및 동행식당 등의 사업을 확대·개선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주거 최악자인 쪽방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생활편의 증진
- 사업범위 : 5대 쪽방촌, 쪽방건물 283개동, 쪽방주민 2,400명 지원('22.12월말 기준)
- 사업분야 : 쪽방상담소 운영을 통한 상담·돌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생활안정 지원, 안전점검 및 주거 생활환경 개선 등
- 사업예산('23) : 8,411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생활안정지원사업 : 상담·돌봄 73,628건, 후원 675,270건(약 26.5억원)
- 동행식당 42개소 운영 및 일평균 1,583명(85.7%), 연인원 245,343명 이용
- '22년 폭염대비 쪽방촌 에어컨 123대 설치 및 전기요금 약 1,200만원 지원
- 쪽방주민 무료치과진료실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개소 및 137명 진료
- 쪽방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1,540건(전기 1,107 / 가스 423) 및 재점검(124건) 실시
- 여름철·겨울철 특별보호 대책으로 건강특별보호 대상자 128명 밀착 지원 및 방문간호
활동 39,331회, 소방재난본부 합동 안전 점검 및 야간 소방순찰대 운영 등 실시

□ 추진계획('23년)

① 쪽방주민의 건강한 하루 한 끼 식사보장을 위한 동행식당 운영 **확대**

- 동행식당 50개소 확대운영(42 → 50개소) 및 주민에게 1일 1식 식권(8,000원) 제공
 - ※ '23년 1월말 현재, 42개소(돈의동9, 창신동8, 남대문9, 서울역9, 영등포7)운영 중
- '전자식권' 도입(5월~)으로 주민 낙인감 최소화 및 이용의 편의성 증진

② 건강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동행목욕탕 운영 **신규**

- 市 '동행' 사업모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민간후원(연 5억원)으로 기획
- 동행목욕탕 지정(쪽방촌별 2~3개) 및 주민에게 목욕탕 이용권(1만원, 월 2회) 제공
- 현지조사 및 동행목욕탕 지정(2월), 기업 업무협약 및 주민 이용 시작(3월~)

③ '길벗 쪽방돌봄단' 운영 **신규**

- 쪽방상당소 중심 '길벗 쪽방돌봄단' (돌봄매니저 1명+우리동네돌봄단 4명) 운영
- 수요 맞춤형 돌봄 제공 및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기획·추진
 - ※ '우리동네돌봄단' 배치 현황('23.1월말 기준) : 중구(3), 용산구(4), 영등포구(1)

④ 쪽방주민 무료치과진료사업 5개 쪽방촌으로 확대 운영 **확대**

-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 치과진료 및 4개 쪽방촌 방문순회 진료 시작(1월~)
 - ※ '23. 1월말 기준, 치과진료 24회 및 137명 치료(잇몸 29, 발치 23, 신경·충치 27, 임시틀니 1, 예방 18)
- 보철,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를 5개 쪽방촌 전체로 확대(7월~)

⑤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 설치·운영 **신규**

- 쪽방상당소 기부물품 전담관리 푸드마켓(돈의동·서울역) 설치·운영(3월~)
- 주민이 물품진열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가는 이용자 중심 마켓 운영
- 무선인식(RFID)카드 활용, 선진 유통시스템 도입, 다양한 물품 후원 발굴

□ 향후일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확대·개선 추진 : '23. 2월~12월
- 신규사업(동행목욕탕, 푸드마켓 등) 계획 수립·운영 : '23. 3월~12월
- 사업별 중간평가 및 지도·점검 : '23. 8월~ 9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24. 1월

13 거리노숙인 등 무료급식 지원기준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김동은 ☎7482 담당 : 이진산 ☎7484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무료급식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급식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일시보호대상 노숙인 950명
- 지원시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3개소) 및 일시보호시설(4개소)
- 소요예산 : 2,452,800천원(종합지원센터 1,458,540천원, 일시보호시설 994,260천원)

〈 주요 지적사항('22.11.21, 제315회 정례회(예산심의)) 〉

- ◆ 서울시 노숙인 수는 지속 감소하나, '23년 사업설명서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급식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급식 지원기준 수립·추진 필요

□ 주요 추진(개선)사항

- 노숙인 공공급식 강화 : 급식 지원기준 1일 1식 → 2식(중식 추가)
 - (기존) 1일 1식, 1일 연인원 1,130명 → (변경) 1일 2식, 1일 연인원 1,680명
 - 종합지원센터 : 679명 → 999명

(단위 : 명)

구분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2022	679	200	-	200	250	250	-	229	-	229
2023	999	350	150	200	350	250	100	299	90	209

- 일시보호시설 : 451명 → 681명

(단위 : 명)

구분	계	만나샘			응달샘드림인			햇살보금자리			디딤센터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석식
2022	451	124	-	124	164	-	164	100	-	100	63	17	23	23
2023	681	214	90	124	244	80	164	160	60	100	63	17	23	23

※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인 디딤센터는 여성노숙인 보호를 위해 1일 3식 제공

- 급식 지원기준 : '23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계획 반영('23.1.16.)

□ 향후일정

- 급식현황 모니터링, 이용자 증감 반영 '24년 급식예산 편성 : '23. 7월

IV. 서면 보고 (각 부서별)

1. 복지정책과	35
2. 안심돌봄복지과	43
3. 어르신복지과	49
4. 장애인복지정책과	57
5. 장애인자립지원과	65
6. 자활지원과	73

복지정책과

1.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추진현황 37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38
3.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39
4.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확대로 예우 강화 40
5. 사회복지시설 위탁 지침 및 서울형 평가 개선 41

1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추진현황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복지협력팀장: 박진영 ☎7345 담당: 김정우 ☎7347

□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조사배경 : 질병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족 돌봄을 위해 학업 등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생계부담을 지고있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조사대상 : 서울거주 14세~34세 가족돌봄청년
- 조사기간 : '22.12.~'23.2. ※ 수행업체 : (주)에스티이노베이션
- 소요예산('22) : 78,839천원

□ 추진실적('22년)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착수('22.10.)
-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홍보('22.12.~)
 -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 의사회·시립·종합병원,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 ①홍보물 제작·발송, ②카카오톡 배너, ③서울시 SNS, ④모바일앱(에브리타임) 광고 등
- 가족돌봄청년 사업설명회 개최 및 담당자 교육 실시('23.1.27.)
 - 실태조사 추진경과·향후일정 공유, 자치구 협조사항(①동 담당자 교육, ②동별 3~5명 대상자 발굴, ③설문 참여 독려 문자 발송 등) 전달
- 조사현황('23.1.31. 18시 기준) (단위 : 명)

구분	'22.1.11.	'23.1.18.	'23.1.31.	비고
전체응답자	367	757	1,200	3월 개학시즌에 학생, 청년 대상 집중홍보 실시
유효응답자*	110	315	436	

* 설문완료자 중 일부 문항(돌봄대상자 여부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측되는 사람

□ 향후일정

- 실태조사 용역 결과도출 및 정책수립 : '23.4.~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3.5.~6.
-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예산확보(추경) 및 사업추진 : '23.7.~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2133-7310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7336 담당: 이선민 ☎7340 / 이향림 ☎7339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23년도 기준, 단위: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함(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사업예산('23) : 3,031,094백만원 (국비60%, 시비28%, 구비12%)
 - 생계 : 1,104,768 의료 : 1,912,783 교육 : 7,297 해산·장제 : 6,246 ※주거급여 : 696,668백만원 별도

□ 추진실적('22년)

- 수급자 지원 : 298,093가구 / 413,055명(중복제외) ('22.12월말 기준)

구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중복포함	206,093	270,310	186,498	247,320	287,757	395,587	26,159	38,418
중복제외	206,093	270,310	14,025	21,109	71,630	112,846	6,345	8,790

- 예산집행 : 2,687,361백만원(집행률 97%)

'23년 주요 개선사항

- 기준 중위소득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 및 주거급여 기준인상(기준중위소득의 46% → 47%) **확대**
- 재산기준 완화 및 3급지에서 4급지로 기준 세분화 **확대**
 -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원 → 17,200만원, 기본재산액 기준 6,900만원 → 9,900만원
 -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지역)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동시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 수시로 안내 **신규**

□ 향후일정

-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하반기 확인조사(2회) 및 월별 확인조사
- 부정수급 신고현황,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 수시

3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복지협력팀장 : 박진영 ☎7345 담당 : 김소람 ☎7331

□ 사업개요

- 설치연도 : 2003년
- 설치목적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
- 설치 및 적립근거
 - (설치)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 (적립)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0.25%
- 사용용도(「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물자의 조달·운송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 재난지원금 선지급(사망자, 부상자, 주택피해) 등

□ 추진실적('22년)

○ '22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격리시설·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여유자금 예치	반환금 및 기타
예산액	828,079	136,403	32,759	4,760	569,532	17,732	25,360	40,255	1,278
집행액	712,970	114,775	32,122	4,413	526,158	9,445	24,779	-	1,278
집행비율(%)	86.1	84.1	98.1	92.7	92.4	53.3	97.7	-	100.0
잔액	115,110	21,628	637	347	43,374	8,288	581	40,255	0

'23년 구호계정 운용계획 ('23. 1월 말 기준)

-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 현황
 - 2023년 사업비 : 104,229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32,396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4,347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4,293백만원, 생활지원비 14,935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16,157백만원, 반환금 22,100백만원

□ 향후일정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업별 집행 : '23. 1월~12월

4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확대로 예우 강화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보훈복지팀장 : 이윤식 ☎7329 담당 : 김미영, 김산돌 ☎7330, 7334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20,089명 (2022. 12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분	총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총계	120,089	1,961	32,802	8,623	24,600	332	581	7,252	574	43,364
본인	77,903	2	16,842	0	9,392	160	489	7,252	402	43,364
유족	42,186	1,959	15,960	8,623	15,208	172	92	0	172	0

○ 사업내용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생활보조수당(저소득유공자), 보훈예우수당(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애국지사),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저소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급, 기념일(3·1절, 광복절 등) 위문금 지급

○ 사업예산('23) : 72,989백만원('22년 67,701백만원/증 5,288백만원)

- 참전명예수당 등 5종 수당 : 68,956백만원, 기념일 위문지원금 : 2,551백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1,400백만원, 의사상자 지원 및 기타 82백만원

□ 추진실적('22년)

- 보훈수당 5종(월 평균 48,313명) 및 기념일 위문금(31,200명) 지급 64,035백만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6,269건 1,044백만원/ 의사상자 지원 5건 10백만원

'23년 주요 개선사항

- 생활보조수당(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인상 : 10만원→20만원 **확대**
 - 일반 유공자 대상 수당과 동일한 지원금 인상, 소득개선 및 예우 강화 (4,600명/ 55억↑)
-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대상 확대 : 기초연금수급자를 지급대상에 신규포함 (증 1,000명) 수립 **확대**
 - 당초 지급대상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미만 2,700여명 → 3,700여명)

□ 향후일정

- 3·1절 기념 위로금 지급(대상자 7,500명/각 10만원) : '23.3.1.
-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지급 : 연중

5 사회복지시설 위탁 지침 및 서울형 평가 개선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2133-7310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7324 담당: 문성훈 ☎7325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관리 지침

□ 추진 배경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수탁법인의 책임성 제고 위해 지침 지속 개정중
-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탁자 필수역량, 선정기준 등 재검토 필요

□ 추진 계획

-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지침 개선 연구 시행 (서울시복지재단)
 - 시설 위탁 실태 분석 통한 수탁자 선정 필수요건, 필요 역량 수준 파악
 -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세부 지침(안) 마련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6종 대상 서울형 평가 시행중
 -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행 6년차로 평가 결과 활용, 보상, 시민알권리 등 제도 개선 필요

□ 추진 계획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행(서울시복지재단)
 - 시민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울형 평가체계의 성과지향적 발전 방향 도출
 - 다양한 전·현직 전문가 등 자문·인터뷰 통한 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

□ 향후일정

- (위탁연구) 계획수립(2월) → 중간보고(7월) → 결과 및 개선안 마련(하반기)
- (평가연구) 계획수립(2월) → 중간보고(7월) → 결과 및 개선안 마련(하반기)

안심돌봄복지과

1. 고독사 예방대책 사업 추진 45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46
3. 민간복지자원 협력 사업 추진 47

1 고독사 예방대책 사업 추진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 ☎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 안재동 ☎7386 담당 : 김재희 ☎7391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사업내용 :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관리를 통한 고독사 예방

구 분	내 용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등 정기 모니터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실시
AI안부확인서비스	AI 자동전화를 통한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및 불편사항 전달
스마트플러그	전력량·조도 확인을 통한 1인가구 상시 안전 확인(24, 36, 50시간 주기)

□ 추진실적('22년)

-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를 위한 우리동네돌봄단(1,200명) 안부확인
 - 전화(762,321건)·방문(157,788건) 통한 안부확인 및 필요시 공적·민간 자원 연계
 - 산책,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병행(보건복지부 시범사업 63개동)
- 사회적 고립가구 AI안부확인서비스 실시(13,044명), 스마트플러그 설치(총 3,463가구)
 - AI안부확인 전화 성공률 81.3%, 스마트플러그 24시간 관제 및 대응체계 구축('22.10월~)
- 「'22년 사회적 고립 1인가구(약 12만명) 실태조사」 추진('22.10.~'23.1.) ※ 조사결과 집계 중

'23년 주요 개선사항

- 연중 빈틈없는 위험가구 관리를 위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기간 확대(9 → 12개월) **확대**
- 스마트플러그 설치 대상자 확대(3,463가구 → 4,463가구) **확대**
- 「'22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연계, AI안부확인서비스 확대 추진('23.3월~) **확대**

□ 향후일정

- '23년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추진 : '23. 3월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 ☎2133-7370 복지시설팀장 : 진기준 ☎7387 담당 : 고영빈 ☎7388/김효경 ☎7389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2조
- 사업대상 : 총 99개소(시립 1, 구립 54, SH/LH 30, 법인 14)
- 사업내용 : 3대 기능(사례관리·지역조직화·서비스제공) 추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
- 사업예산('23)
 - 운영비 : 96,689백만원 ※ 구립·법인 인건비·운영비 75%, 그 외 100% 지원
 - 기능보강 : 6,688백만원 ※ 시립 100%, 영구임대 70% 이내, 구립·법인 70~30% 지원

□ 추진실적('22년)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
 - 운영비 93,903백만원(99개소), 기능보강비 2,828백만원(43개소, 63개 사업)
-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지원(21개구, 55개 복지관, 743백만원)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
 - 동·하절기 안전점검(99개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상·하반기 2회)
 -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안전점검(15개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9개소) 등

'23년 주요 개선사항

-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한 연구 추진 **신규**
- 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 : 평균호봉제(4급 9호봉) → 실인건비 **확대**
- 사회복지관 운영비 개소당 30백만원 인상 **확대**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확대('22년 55개소 → '23년 72개소) **확대**

□ 향후일정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복지재단) : '23. 2~12월
- '23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실시 및 컨설팅 : '23. 2~12월

3 민간복지자원 협력 사업 추진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 ☎2133-7370 민간자원팀장 : 이성화 ☎7395 담당 : 김지수 ☎7398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요건이 유연한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사업내용

구 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기부모금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및 나눔 네트워크 연중 모금 - 통장사업 재원 모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인증관리, 육성, 정보지원 등 ◦ 기업 등 사회공헌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 기업·단체 발굴 및 연계
수행기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예산('23)	848백만원(시비 100%)	622백만원(시비 100%)

- 민간자원 모금목표('23) : 700억 원

□ 추진실적('22년)

- 민간자원 기부모금 : 697억 원(연간목표 대비 102.5%)

구 분	합 계	민간 기부모금활동	기업사회공헌 등 기타
목 표	680억 원	439억 원	241억 원
실 적	697억 원 (102.5%)	476억 원 (108.4%)	221억 원 (91.7%)

- 민간 기부모금활동 : 따뜻한 겨울나기(427억 원), 나눔네트워크(39억 원), 통장사업(10억 원)
- 기업사회공헌 등 : 기업사회공헌(187억 원), 자치구 명절나눔행사(34억 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 자원봉사자 육성(4,999명), 기업 나눔협약 체결(누적 184개)
-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24건),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활동(간담회, 자원봉사자 교육 등 7회)

□ 향후일정

- 지역밀착형 나눔네트워크 사업 추진 : 연중
- '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기업 홍보 및 선정 : '23.7~12월

어르신복지과

1.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51
2.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52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53
4.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54
5. 무연고 및 저소득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55

1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어르신정책팀장 : 손선희 ☎7403 담당 : 이왕기 ☎7409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
- 사업대상 : 경로당 3,554개소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 경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구 분	매칭비율(%)			개소당 지원기준	구 분	매칭비율(%)			개소당 지원기준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운영비	0	56	44	월35만원×12개월	양곡비	20	40	40	53,170원 × 8포대
난방비	20	40	40	월37만원× 5개월	냉방비	20	40	40	월11.5만원×2개월

- 서울형 스마트 경로당(기본형, 특화형, 통합형) 시범사업 추진
 - ※ 11개 자치구(105개소) :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 개방형 경로당 운영(751개) : 지역주민과 소통·공유하는 공간으로 운영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순회, 특화) 사업 및 인건비 지원
- 사업예산('23) : 14,531백만원(국비 1,025, 시비 13,506)

□ 추진실적('22년)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등록 경로당 수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예산	지원개소	예산	지원개소	예산	지원개소
3,554	202,243	1,430	1,587,300	1,470	896,603	3,484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 35,966개, 836,132명 이용

'23년 주요 개선사항

- 스마트 경로당 시범사업 본격 운영(11개 자치구, 스마트 경로당 105개소) **신규**
-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액 인상 **확대**
 - 운영비(월 30만원→ 35만원), 냉방비(월 10만원→11.5만원), 난방비(월 32만원→ 37만원)

□ 향후일정

- 경로당 난방비 특교 추가 지원(1,458개소, 148천원*5개월분) : '23.2월 중
- 개방형 경로당 실적 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 '23.10월 중

2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 조수민 ☎7414 담당 : 안영선 ☎9537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32,274명

구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1식)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7,272명	4,000원 (주 6회)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904명	4,000원 (주 7회)
밀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자	9,098명	4,500원 (주 2회)

- 수행기관 : 총 217개 기관(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등)
- 사업예산('23) : 38,160백만원(시비 기준) ※ 집행액('23.1월) : 11,250백만원(29%)

□ 추진실적('22년)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 29,539명 / 33,661백만원(집행율 96.7%)
 - 경로식당 16,185명, 도시락배달 5,378명, 밀반찬배달 7,976명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인상 추진 : 3,500원 → 4,000원('22.6월 ~)
- 저소득 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 추진 : 120명, 2개 자치구(은평, 강동)
 - 도시락 배달 어르신 중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식사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선정
- 급식보조인력 지원(50+보람일자리) : 총 229명(조리 111명, 배달 108명, 조사 10명)

'23년 주요 개선사항

- 조리인력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조리사(25명) 지원 **신규**
 - 배치기준 : 경로식당(무료) 급식인원 50명 이상 + 총 급식인원 200명 이상, 수행기관당 1명분 지원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형 식사지원 사업 확대 : 120명('22) → 200명('23) **확대**

□ 향후일정

- 건강형 식사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23. 2~3월
- 상반기 급식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23. 6월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 최준혁 ☎7412 담당 : 허요섭 ☎7417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중 돌봄 필요 어르신
- 수행기관 : 70개소 (자치구별 1~5개소)
- 수행인력 : 3,279명 (전담사회복지사 225명, 생활지원사 3,054명)
- 사업내용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기타 민간 후원연계서비스
- 사업예산('23) : 51,941백만원(국비 34,547, 시비 17,394, 구비 별도)

□ 추진실적('22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원 : 총 42,211명
- 대상자의 사회적·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구분	대상자 특성	추진결과
실시간 안전확인	신체 기능 저하, 고령 등 고위험 취약 어르신	13,000명
특화서비스 제공	사회적 고립 및 은둔·우울형 어르신	539명
병원동행서비스	기저질환 등으로 정기적 병원 이용이 필요한 어르신	1,308명

- 수행인력(3,047명) 처우 개선 지원 : 총 1,805백만원
 - 활동비(교통·통신비 등) 1,622백만원, 폭염·한파 대응 물품 지원 183백만원
- 사업 추진 관련 현장간담회(광역단위 실무협의체) 추진 : 총 9회

'23년 주요 개선사항

-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 ('22) 45,925명 ⇒ ('23) 49,577명 **확대**
- 수행인력 확대 : ('22) 3,047명 ⇒ ('23) 3,279명 **확대**
- 고위험 취약어르신 대상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 확대 : ('22) 13,000명 ⇒ ('23) 14,000명 **확대**

□ 향후일정

- 자치구별 대표수행기관 특화 사업 공모·선정 : '23. 5월 ~
- '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 결과 점검 : '23. 6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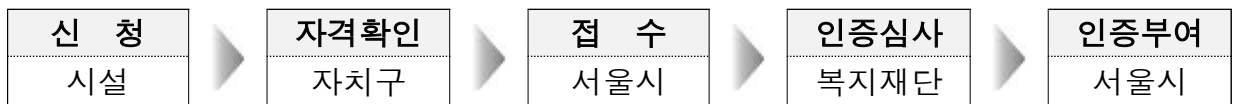
4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요양보호팀장 : 권고은 ☎7419 담당 : 강우혁 ☎7422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장기요양기관 1,757개(데이케어 468, 노인의료 501, 방문요양 788)
- 인증현황 : 259개소(데이케어 194, 노인의료 54, 방문요양 11)
- 사업내용
 -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적 운영기준 설정
 - 기준 충족시 좋은 돌봄 인증부여(3년)를 통한 인증 보조금 지원, 서비스 품질 관리
 -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복지포인트(1인당 30만원) 지원

○ 인증절차



- 사업예산('23) : 16,304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22년 상·하반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신규 선정 : 37개소 인증
 - 신규 신청 53개소 중 37개소 선정(데이케어센터 21, 노인의료복지 10, 방문요양 6)
- '22년도 좋은돌봄인증 지표개선 추진으로 공신력 강화('22.3~5월)
 -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감염병 질환관리 등 세부지표 강화 ※ 개선회의 11회 실시

□ 향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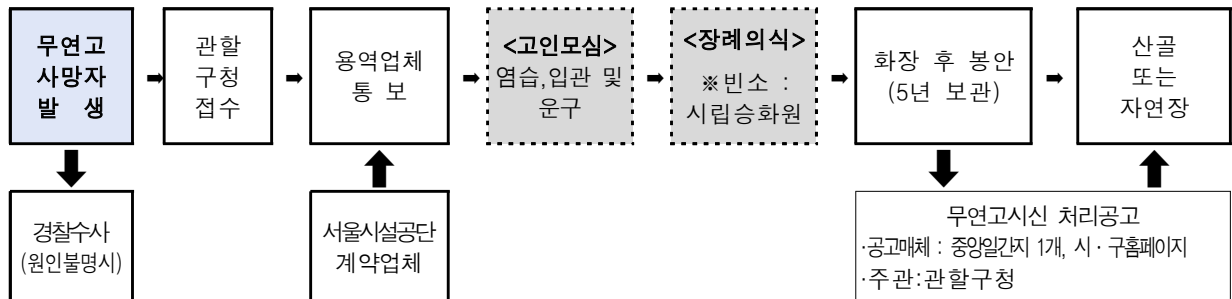
- '23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운영계획 수립 : '23. 2월
- '23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시설 선정(상반기) : '23. 5월

5 무연고 및 저소득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장사문화팀장 : 엄기갑 ☎7428 담당 : 배연이 ☎7432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등
- 사업목적 :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 등 장례능력 없는 취약 계층에 장례의식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복지 가치 실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 공영장례 조례 등)
 -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연고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경우
- 지원내용 : 고인모심(염습, 입관), 장례의식(종교의식 포함), 장례식장 안치료 등



- 사업예산('23) : 931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장례지원 : 1,113명('22.1월 ~ 12월) ※무연고 1,103명, 저소득시민 10명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 ('20) 667명 → ('21) 864명 → ('22) 1,113명
- '22년 하반기 공영장례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22. 9월)
 - 공영장례 의의 및 업무절차 등 대면교육(2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 40명)

□ 향후일정

- '23년 상반기 공영장례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 '23. 4월

장애인복지정책과

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59
2.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60
3.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61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3
5.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64

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 ☎7442 담당 : 임종수 ☎7446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이용대상 : 학령기 이후(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교육과정 : 5년 ※ 1년단위 단과반 운영(5개센터 시범운영)
 - 필수과목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과목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목 선정
- 이용정원 : 센터별 30명(장애인 3명당 교사 1명 배치) ※ 전용면적 500㎡이상
- 이 용 료 : 25~30만원
- 운영현황 : 24개소(발달장애인 664명, 종사자 291명)
- 사업예산('23) : 12,963백만원(시비 90%, 구비 10% 이상 의무매칭)

□ 추진실적('22년)

- 24개소 센터에 발달장애인 664명 이용(연인원 195,168명)
- 용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22. 1월)
-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단과반 시범 운영(2개소)
 - 노원, 은평 : 학업기간(5년)이 만료된 이용인을 대상으로 1년 단위 교육서비스 제공

'23년 주요 개선사항

- AI활용 행동분석 시스템 시범 설치 2개소(150백만원) **신규**
 - AI활용 발달장애인의 행동 상시관찰 및 행동패턴 영상 DB 구축 → 전문가 솔루션 지원
- 도전적 행동 중재 전문가 신규 배치 3명 **신규**
 - 도전적행동 발생 장애인에게 행동중재 전문가를 배치하여 단기 행동수정 등 지원
-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상반기 개소 : 전 자치구 설치 완료 **확대**

□ 향후일정

- AI 활용 행동분석시스템 설치센터 공모 : '23. 2월
- 도전적 행동 중재 전문가 배치 : '23. 4월

2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임하정 ☎7442 담당:이순한 ☎7364

□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2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
- 지원대상 : 총 4개소(마포, 구로, 노원, 서대문)
- 이용대상 : 18세~65세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센터당 15명 이상)
- 이용시간 및 이용료 : 10~16시(월~금), 자부담 280천원(식비별도)
- 공간구성 : 외상, 경직 등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무장애 공간 및 특수설비 설치 등(전용면적 400㎡ 이상)
- 프로그램 : 교육 + 돌봄 + 건강관리 등 뇌병변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

구분	교육	건강	돌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과목 : 사회성 증진 등 이용자의 눈높이 맞춤교육 • 선택과목 : 이용자 욕구 및 건강기능상태 맞춤교육 • 개별작업 및 취미활동 등 	이용자 활력징후 파악, 건강 관리 계획 수립, 건강상담, 자원봉사자 의사 내원, 혈액순환개선 공기압 다리마사지 등	일상생활관리, 식사 및 간식 제공, 신변처리, 위생관리 등

- 사업예산('23) : 1,65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운영 ※ 전국 최초 설치·운영
 - 프로그램 운영 : 4,994회(41,350건)
- 구로구('21. 3.), 노원구('22. 1.), 서대문구('22. 9.)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지정

'23년 주요 개선사항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추가 지정('23. 상반기 / 1개소)
- 구로구('23. 3월), 노원구('23. 4월) 개관 총 3개소 운영 ※ 서대문구 24.6월 개관

□ 향후일정

- 구로구·노원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개관 : '23. 3~4월

3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440 장애인협력지원팀장: 이호성☎7464 담당: 방혜진☎7468

□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항,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3조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등 이동권 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버스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23. 1월 현재 388천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 무료승차 지원
- 대상버스 : 서울버스 및 경기·인천버스(환승시)
 - 이용카드 : 신한카드(후불식·충전식 각1종), 티머니교통카드(충전식)
- 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후 이용요금을 장애인에게 계좌환급
- 사업예산('23) : 4,171백만원

□ 추진실적('22년)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수립('22.4.18.)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대상, 대상 버스, 지원 방법, 추진 절차 등
 - 장애인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구축 : 신청, 접수, 환급 등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의견수렴 설문조사('22.12.6) ※ 3월 결과보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수준 향상, 지원대상 범위, 지원 버스 기준 등 의견조사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의견수렴 토론회('22.12.22.)
 - 장애 유형별 장애인단체 대표 6명, 복지 분야 전문가 3명 참여
 - 버스요금 지원과 병행하여 장애인 버스 이용환경 및 인식개선 필요

□ 향후일정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3. 3월
- 장애인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신청·접수 : '23. 6월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23. 7월(사용분)

참고 장애인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 용역명 : 장애인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구축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2.11. ~ '23.6.)
- 과업내용
 - 서울 거주 장애인 여부 및 관련 변동내역 관리,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접수
 - 장애인 카드발급시스템(교통정책과) ⇔ 티머니·신한카드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 버스 이용요금(환승정보) 수신 및 장애인 개인별 정산, 환급액 산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감리용역 별도 추진
- 사업예산('22) : 577백만원
- ※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완료

▶ 정보화사업타당성 심사('22.7.8), 행안부 사전협의('22.8.26), 과업심의위원회 개최('22.9.6)
 보안성 검토('22.9.15), 계약심사('22.9.15), 사전규격 공개('22.9.20), 계약의뢰('22.9.29)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스템 연계 업무개념도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고광현 ☎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은진 ☎7469 담당: 이재라 ☎7458

□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
- 지원대상 및 기준 : 243개소, 이용인 3,041명, 종사자 2,280명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41개소(시립 1, 민간 40)	39개소(시립 2, 구립1, 민간 36)	163개소(구립1, 민간162)
이용인/ 종사자	2,007명 / 1,738명	427명 / 381명	607명 / 161명
거주기간	제한없음	30일 이내, 필요시 연장가능	제한없음
실비이용료 (시설운영위원회 결정)	평균 453천원/월	평균 470천원/월	100천원~450천원/월
예산	108,935백만원(국시비50:50)	20,118백만원(시비100%)	13,71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방역강화 추진('22.2월 / 8월)
 -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 물품 지원 및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방역현장점검
-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추가지원 시설 선정('22.6월)
 - 운영비 보조금 신규지원(2개소), 야간 대체인력 신규지원(15개소)
- 시립 단기거주시설(중랑, 서대문) 민간위탁 재위탁('22.8월)
- 보건복지부 거주시설(거주시설 41, 단기사설 39) 평가 실시('22.7~8월)
- 보건복지부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22.9월)
- 중증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 개소('22.10월)
-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법인 선정('22.12월)
 - 위탁업체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위탁기간 : '23.1.4~'25.12.31)

□ 향후일정

-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운영개선 계획수립 : '23. 3월~

5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 ☎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 김은영 ☎7367 담당 : 이유섭 ☎745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설거주 장애인의 개인 특성 및 욕구에 기초한 독립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관할 시설에서 퇴소한 만 19세 이상으로 독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격심의를 거쳐 선정된 장애인
- 주택운영 : 425호 (기존 268호, 신규 157호)
 - (LH·SH 지원주택) 최장 20년 거주, 독립거주, 보증금 및 월임대료 본인부담
 - (자립생활주택) 최대 4년 거주, 2~3인 거주, 생활비만 본인 부담
- 사업예산('23) : 15,009백만원(국비 389백만원, 시비 14,620백만원)

□ 추진실적('22년)

- 지원현황 : 268호 298명 / 10,369백만원(집행율 92.3%)
 - (SH 지원주택) 202호 198명(신규 31명 입주) ▶ 탈시설 14명, 재가 17명
 - (자립생활주택) 66호 100명(신규 25명 입주) ▶ 탈시설 25명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43개소, 종사자 205명
 - (SH 지원주택) 9개소 141명 / (자립생활주택) 34개소 64명

'23년 주요 개선사항

- 주거지원 확대 : ('22)268호 298명 → ('23)425호 537명(157호 239명 ↑) **확대**

□ 향후일정

- 시설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만족도 및 인권 조사(연1회,200명) : '23.2월~6월
-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입주자 운영기관 선정(상하반기) : '23.2월~12월

장애인자립지원과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내실화 추진 67
2.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68
3. 장애인 쉼터 확충 69
4.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지원 70
5.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확충 71
6.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 지원 72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내실화 추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윤영대☎7372 담당 : 안호준☎7475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4,500명 (소득기준 없음) - 서울시 등록장애인 395천명의 6%
 - 만6세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만65세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급여 : 1~15구간에 따라 월 47~830시간(월 734천원~12,925천원)
- 지원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 사업예산('23) : 553,719백만원(국비50% : 시비 35% : 구비15%)

□ 추진실적('22년)

- 지원현황 : 24,098명 / 499,579백만원(집행률 100%)
 - 만65세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존급여 지원 : 1,478명
 - 최종중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 2,800명

'23년 주요 개선사항

- 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 확대 **확대**
 - 단가 : ('22) 14,800원 → ('23) 15,570원 / 이용자수 : ('22) 24,000명 → ('23) 24,500명
-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 수급 만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신규**
 - 장기요양급여 우선 지원, 부가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향후일정

- 사업예산 자치구 교부 : 매분기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이용내역 점검 : '23.3월
- 사업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23.3월~12월

2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2133-7470 장애인일자리팀장: 강윤경 ☎7453 담당: 백미화, 박주연 ☎9615, 796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대상 일자리 제공연계를 통해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장애인
- 사업목표 : 7,611개(공공 4,356개, 직업재활시설 2,800, 민간연계 455개)
- 사업예산('23) : 102,411백만원
 - 공공일자리 48,218백만원(국비 20,310, 시비 27,908), 직업재활시설 50,095백만원(시비 100%)
 - 민간연계 4,098백만원 (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장애 유형,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직접 일자리 제공(6,408개, 예산 87,585백만원, 100% 집행)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안마사, 요양보호사사서보조 등 일자리 제공(3,303개)
 -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등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349개)
 -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근로기회 및 직무훈련 제공(2,756개)
- 민간부문 취업 지원 강화(446개, 3,812백만원, 100% 집행)
 - 민간 취업 상담·알선, 업체개발 및 사업체 현장훈련 추진(353개)
 - 발달장애인 특화 현장중심 직업훈련, 기업 인턴쉽 활용 민간고용 연계(93개)

'23년 주요 개선사항

-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민간연계 등 일자리 수 확대(7,155 → 7,611개, 456개 증) **확대**
 - 공공일자리(441개 증), 민간연계(15개 증)
- 장애인 신규 일자리 발굴 강화
 - 발달장애인 우편보조, 장애 예술인, 대기업·재택 연계 고용처 발굴 확대

□ 향후일정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컨설팅 추진 : '23.3월~
- 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컨설팅 추진 : '23.6월 ~ 8월

3 장애인 쉽터 확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운영대☎7472 담당 : 송혜민☎7447

장애인편의증진팀장 : 황미연☎7460 담당 : 류명조☎7949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로당 등 지역내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고령의 장애인에게 자조모임 공간 조성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 서 울 시 : 운영 자치구 선정, 보조금 지원
- 자 치 구 : 쉽터 조성공간 마련, 운영단체 선정
- 운영단체 :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동프로그램 제공 등 쉽터 운영

○ 지원현황 : 총 32개소(지체 3, 시각 11, 농아인 18)

○ 사업예산('23) : 1,586백만원 ※ 인건비·운영비 시·구 매칭 50%

□ 추진실적('22년)

○ 지원현황 : 총 32개소 / 2,029백만원(집행률 95.6%)

○ 지체장애인 3개소(금천·송파·강동), 시각장애인 2개소(강북·중랑) 쉽터 신규 조성

'23년 주요 개선사항

- 지체장애인 전용쉽터 신규 조성 3개소 공모 선정('23.3월) **확대**
-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전용쉽터 신규 지원(인건비·운영비) 각 2개소 공모 선정('23.3월) **확대**

□ 향후일정

- 장애인 전용쉽터 수요조사(→ 자치구) : '23. 2월
- 지체장애인 전용쉽터 신규 조성 3개소 선정 : '23. 3월
 - 자치구 운영단체 선정('23.3월), 리모델링 공사('23.4월), 운영 개시('23.7월)
- 시각장애인·농아인 전용쉽터 신규 지원(인건비·운영비) 2개소 선정 : '23. 3월
- 장애인 쉽터 보조금 교부 : 분기별

4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윤영대 ☎7472 담당 : 김현숙 ☎747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별 수도요금 월 10톤(10m³)까지 감면
 - 세대별 감면액 : 월 최대 11,500원
 - ▶ 상수도요금 5,8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10m³ 기준)
- 사업예산('23) : 6,358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2년)

- 지원현황 : 57,073세대 / 3,054백만원(집행률 41.8%)
 - 전체 77,764세대 중 57,073세대 접수(접수율 73.4%)
 -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감면대상자가 중복으로 제외되어 집행액 저조
- 홍보실적 : 홍보물(광고 포스터) 제작하여 언론 광고 시행 등
 - 지면 및 온라인 광고(2개 언론사), 자치구 홍보 독려(대상세대 안내문 송부 등)

'23년 주요 개선사항

- 수도요금 감면액 인상(10m³ 기준) : 월 최대 10,500원('22년) → 11,500원('23년)
 - 상수도요금 인상분(10m³ 기준, 4,800원 → 5,800원으로 1,000원 인상 반영)
- 장애인 자격변동 자동반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개선**

□ 향후일정

-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연계 협의 진행 : '23.2월~
 - 서울시 수도요금관리시스템(Arisu인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하여 감면자의 장애인 자격변동 및 전출사항 자동반영 추진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 사업 홍보 실시 : '23.2월~

5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확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 ☎2133-7470 장애인이용시설팀장 : 강준민 ☎7450 담당 : 백현기 ☎7478

□ 운영개요

- 시설현황 : 51개소 [시립(9), 구립(18), 법인(24)]
 - 장애유형별 : 종합(32), 시각(5), 청각(3), 지체·뇌병변(5), 발달(6)
- 주요내용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교육 및 직업훈련,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 사업예산('23) : 85,535백만원(시비 100%) ※ 구비 19,271백만원 별도

□ 추진실적('22년)

- 지원현황 : 일평균 330명, 연간 82천명 지원 / 89,464백만원(집행률 99.9%)
 - 운영비 87,446백만원(51개소), 최종증 등 시책사업 1,901백만원(7개 사업) 등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 북부장래인, 서울장애인
- 구립장애인복지관 준공·개관 : 강북 장애인복지관 별관('22.11.준공)
-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센터 확충: 4건(신축1, 증축3) / 총 77,047백만원

시 설 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공사규모	공정단계
시립 서대문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15.8~'24.2	18,027 ※'23년 본예산:4,495	연면적 : 3,478㎡ (지하2층/지상9층)	•설계용역 완료 •지반공사 중
시립 발달장애 복지관 별관 건립	'20.1~'24.2	6,982 ※'23년 본예산:3,396	연면적 : 1,184㎡ (지하1층/지상4층)	•설계용역 완료 •공사착공 준비중
시립 반대비 체육센터 건립	'20.6.~'26.2.	19,426 (국비:4,000, 시비:15,426)	연면적 : 3,260㎡ (지하2층/지상3층)	•설계공모 완료 •설계용역 중
구립 강동장애인 복지관 신축	'18.10.~'23.12.	32,612 (시비:4231, 구비:28,381)	연면적 : 4,476㎡ (지하3층/지상6층)	•공사착공 •지반공사 중

'23년 주요 개선사항

- 장애인복지관 표준인력 산정(안) 개선 **개선**
- 최종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복지관에서 이용자 모집·선정 **개선**

□ 향후일정

- 추진일정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 '23년 연중
- 장애인복지관 표준인력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 : '23년 상반기

6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 ☎2133-7470 장애인편의증진팀장 : 황미연 ☎7460 담당 : 김예슬 ☎746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가정 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거환경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세대주(세대원)가 중증 장애인인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개조비 30% 본인 부담)

(단위 : 천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5%	1,351	2,247	2,883	3,511	4,115	4,698

- 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 사업예산('23) : 1,323백만원(국비 100%)

□ 추진실적('22년)

- 지원현황 : 100가구 / 400백만원(집행률 100%)
 - 위탁기관 현장실사(신청 가구) 및 전문가 기술자문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가구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지원

'23년 주요 개선사항

- 수혜대상 확대 : '22년 100가구 → '23년 290가구 확대 **확대**
- 예산 증액 : '22년 400백만원(시비 100%) → '23년 1,323백만원(국비 100%) **확대**

□ 향후일정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 홍보 실시 : '23. 2~3월
- 주거편의 지원 신청, 대상가구 선정 : '23. 3월
- 전문가 현장기술 자문(견적) 및 공사진행 : '23. 4~11월
- 만족도 조사 분석 및 사업평가 : '23. 12월

자활지원과

1. 거리노숙인 보호 75
2. 노숙인 등 주거안정 지원 76
3.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77
4.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78
5. 자활근로 사업 지원 79

1 거리노숙인 보호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김동은 ☎7482 담당 : 이진산 ☎7484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상담원이 거리노숙인을 찾아가 상담·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잠자리·급식·위생 서비스 등 응급보호 지원
- 추진내용
 - 종합지원센터(3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따스한채움터 등 이용시설 운영
 - ▶ 정신건강팀, 거리상담반, 위기대응콜(☎1600-9582) 등 운영
 - 노숙인 실태조사, 여름철·겨울철 보호대책,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지원 등
- 사업예산('23) : 13,962백만원 (국비 112백만원 / 시비 13,850백만원)

□ 추진실적('22년)

- 시설 이용인원 : 일평균 취침 294명, 급식 1,139명

(단위 : 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만나샘	응달샘 드롭인센터	햇살 보금자리	디딤센터
취침	294	133	16	44	17	38	30	16
급식	1,139	236	235	159	178	186	85	60

- 정신건강팀 : 7,010건 상담(입원 244건 등) / 위기대응콜 2,268건 접수(현장출동 497건 등)
- 따스한채움터 : 일평균 340명(1일 2식, 10개 단체 참여)
-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 상담 및 조치 33,405건
 - 시설연계 393건(생활시설 입소 155), 병원입원 252건, 119신고 62건, 공적복지 선정 95건, 기타 상담·조치 32,603건

□ 향후일정

- 거리노숙인 상담원(자치구, 노숙인시설) 교육 추진 : '23.3월
- '23년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 추진 : '23.3월~4월

2 노숙인 등 주거안정 지원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김동은 ☎7482 담당 : 유연수 ☎7490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노숙인 등에게 안정적 주거 연계 및 사례관리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사업대상 :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 주요내용
 - 임시주거지원 : 월세(연중 최장 6개월), 생활용품, 사례관리 지원
 - 장기주거지원 : LSHH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지원·사례관리
- 사업예산('23) : 3,732백만원 (시비100%)

□ 추진실적('22년)

- 임시주거지원 : 559명 지원
 - 입주 후 자립지원 : 511건(일자리 118, 생계급여 182, 주거급여 211)
 - 생활지원 : 674건(생활용품 403, 주민등록 복원 78, 병원연계 182, 장애인등록 3, 신용회복 8)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467호 626명
 - 지원내용 : 사례관리자 10명 배치, 입주자 관리 (건강, 월세체납, 구직지원 등)
 - 사례관리 : 11,610건 (상담 8,014, 위기지원 154, 구직지원 432, 의료지원 114, 주택보수 355, 공공부조 제도연결 361, 생필품지원 2,180)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심사 : 34명 심의 29명 전환 확정
- 지원주택 248호 공급 및 운영(입주 206, 커뮤니티실 16)
 - 2022년 상반기 입주자 선정(36명)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2022. 10월)

'23년 주요 개선사항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 재배치 추진(계약기관 → 권역별 지정기관) **신규**
- 노숙인 지원주택 60호 추가 지원 및 운영 강화(최소 상담기준 : 월 1회 이상 → 주2회 이상) **확대**
- 노숙인 임시주거 월세 지원액 인상(327천원 → 330천원) **확대**

□ 향후일정

- 주거지원 사업 사업비 교부(분기별) : '23.4월~10월
- 주거지원(임시, 지원주택, 매입임대 사례관리)사업 지도·점검 : '23.12월

3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지원팀장 : 기재일 ☎7489 담당 : 이유란 ☎7488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노동능력 배양 및 자립 지원
- 사업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
- 추진내용 :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2,565개 제공

공동작업장 (380개) 일하는 습관 형성 (쇼핑백, 장난감조립) 월 10~30만원 내외	공공일자리(반일제) (550개) 근로능력 배양 (환경정비, 급식보조) 월 84~103만원 내외(식비포함)	공공일자리(전일제) (260개) 민간일자리 전 단계 (시설방역, 병원업무보조) 월 225만원 내외(식비포함)	민간일자리 (1,375개) 자립 또는 지역사회 진입 (물류센터, 경비직 등)
---	---	---	--

- 사업예산('23) : 15,238백만원(식비 100%)

□ 추진실적('22년)

- 노숙인 일자리 제공 : 2,319개(달성률 91.7%)

(단위 : 개, 명)

구분	계	공공일자리			공동작업장	민간일자리
		소계	반일제	전일제		
'22년 목표	2,528	845	625	220	425	1,258
'22년 실적	2,319	877	592	285	297	1,145
증감	△209	증32	△33	증65	△128	△113

- 노숙인 일자리 처우개선을 위한 식비 지원('22년 4분기)

- 물가 급등에 따른 처우개선 필요성으로 1일 식비 8,000원 '22년 4분기 신설 지급

'23년 주요 개선사항

- 지속적인 전일제 일자리 비중 확대를 위한 소득수준 강화 (220개 ⇒ 260개) **확대**
- 노숙인 일자리 처우개선을 위한 식비 지원 확대 (100천원⇒120~176천원/월) **확대**
-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노숙인 공공일자리 효율적 관리 **신규**

□ 향후일정

-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 및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 '23.1월~12월
- 법인·시설정보시스템으로 노숙인 일자리 효율적 관리 : '23.1월~12월

4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7492 담당: 류지현 ☎7502

□ 사업개요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대상 : 31개 시설 / 입소자 1,471명, 종사자 353명 ('22. 12월말 기준)

구분	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시설수(개소)	31	20	8	3
입소자(명)	1,471	590	196	685
종사자(명)	353	135	65	153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입소자 급식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원
 - 종사자 인건비, 입소자 급식비(2~3식/일), 관리운영비(난방비 포함) 지원
 - 프로그램 사업 지원, 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 사업예산('23) : 25,354백만원(국비 270백만원 / 시비 25,084백만원)
 - 운영비 등 24,535백만원(시비 100%), 기능보강비 819백만원(국비 270, 시비 549)

□ 추진실적('22년)

-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 : 21,736백만원
- 생활시설 지도점검(방역관리 포함) : 시립 4개소, 법인 등 27개소
- 기능보강비 지원 : 14개소 28개 사업, 793백만원

'23년 주요 개선사항

- 노숙인 관리운영비 전년대비 3.7% 인상,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 **확대**
- 입소자 급식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3,500원 ⇒ 4,000원) **확대**
-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국비) 지원 대상시설 확대 **확대**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 전 노숙인시설로 확대 시행

□ 향후일정

- 운영비 재배정 등 시설 운영 지원 : '23. 1월~12월
-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교부 : '23. 2월~

5 자활근로 사업 지원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7495 담당: 박민경 ☎7559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자활급여)
-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의무),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등
- 목표인원 : 12,591명 (참여자 수)
- 주요내용 : 참여자의 노동능력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내 일자리 제공
-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지역사업(주민센터·임대주택 환경정비 등)
 - 인턴·도우미형 : 복지관·기업체 등에서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사업으로 향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간병·장애인통합지원 도우미, 공원관리, 카페, 제빵, 청소, 택배 등)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 목표
- 사업예산('23) : 110,110백만원(국비 75,075/ 시비 35,035) ※재원비율:60:28:12(국사구)

□ 추진실적('22년)

- 참여자 현황 : 12,867명

(단위 : 명)

계	자활지원 유형*					
	업그레이드형				근로 유지형	기 타 (자활기업 gateway 등)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간제 자활근로		
12,867	1,557	679	3,627	455	2,557	3,992

* 행복e음 사회보장통계-자활지원-자활지원사업 지원유형 및 대상자별 자활성공자 현황 기준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현황 : 564개소
 - 자활근로사업단 : 432개소 [수사업단(구로) 외 431개소]
 - 자활기업 : 132개소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광진) 외 131개소]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 13개소
 - 위아청춘(종로) 외 12개소 운영

□ 향후일정

- 참여자 확대를 위한 자치구·사업단별 모니터링 : 매월

V. 보고 안건 (민간위탁, 전용, 예비비, 법정계획)

연번	유형	안 건	소관부서	페이지
1	민간위탁 (재위탁)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어르신 복지과	83
2	민간위탁 (재위탁)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84
3	전 용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 전용 보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85
4	전 용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예산 전용 보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86
5	예비비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복지정책과	87
6	예비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89
7	법정계획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복지정책과	90

1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 ☎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 조수민 ☎7414 담당 : 이주문 ☎ 9535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1길 (대방동)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574㎡, 연면적 2,020.71㎡(지하 1층, 지상 3층)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개관연도 : 2001. 10. 4.
- 현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 : 황경원)
※ 최초위탁 2001. 9. 1. (계약 횟수 6회)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 추진 필요성
 - 현 운영법인과는 재계약을 통해 시설위탁 증으로 차기 위탁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법인 선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3. 9. 1. ~ '28. 8. 31.(5년)
- 위탁사무
 -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복리후생·기능회복·재가노인사업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23년 예산 : 1,723백만원(시비 100%)

□ 향후일정

- 재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3. 3~6월
- 계약·협약심사 및 협약 체결 : '23. 8월

2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 ☎2133-7470 장애인이용시설팀장 : 강준민 ☎7450 담당 : 백현기 ☎7478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
- 시설규모 : 대지면적 985㎡, 연면적 2,734.35㎡(지하 1층, 지상 4층)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가족, 지역사회 주민
- 개관연도 : 1990년
- 현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대표 : 김영일)
※ 최초위탁 '90년, 계약 횟수 8회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 추진 필요성
 - 현 운영법인과는 재계약을 통해 시설위탁 중으로 차기 위탁은 관련 규정
의거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법인 선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3. 8. 1. ~ '28. 7. 31.(5년)
- 위탁사무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 직업지원, 지역네트워크 사업, 평생교육지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홍보 등
- '23년 예산 : 2,253백만원(시비 100%)

□ 향후일정

- 재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3.3~6월
- 계약·협약심사 및 협약 체결 : '23.7월

3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 전용 보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 ☎2133-7470 장애인일자리팀장 : 강운경 ☎7453 담당 : 백미화 ☎9615

□ 추진개요

○ 장애인일자리 사업

- 추진목적 : 직접 일자리 제공 통해 장애인 소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추진방법 : 수행기관 공모 → 기관별 참여자 공고 후 일자리 제공
- 지원내용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경로당·종합복지관) 등 사무보조, 복지서비스 지원업무, 인식개선 등 일자리 제공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통해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 도모
- 추진방법 : 13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지원내용 : 보호고용, 직업상담·훈련,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등 제공

□ 전용금액 및 사유

○ 전용금액 : 9,000천원

○ 전용사유

- 장애인일자리사업·직업재활시설 심사비, 지도점검 회계사 수당 등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중 예산 일부 전용
- ※ 당초 계획 대비 보조사업자 수 증가, 직업재활시설 신규종사자 총원 등에 따른 심사비 증가
-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시 회계 분야 추가실시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65,974,926	-	△9,000	65,965,926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16,200	9,000	-	25,200

□ 추진결과

- 심사비 및 회계사 수당 등 예산집행 : '22.12월

4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예산 전용 보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윤영대 ☎7472 담당 : 김현숙 ☎7474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별 수도요금 월 10톤(10m³)까지 감면
 - 세대별 감면액 : 월 최대 11,500원
 - ▶ 상수도요금 5,8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10m³ 기준)
- 적용방식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 후 감면 적용

□ 전용금액 및 사유

- 전용금액 : 3,436천원
- 전용사유
 - '22. 5월부터 사업 시행중인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 내 편성된 홍보예산 활용하여 언론 광고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일부 부족하여 전용함
 - ※ 사무관리비 56,000천원(복지관 지도점검 등 6,000천원, 언론광고 50,000천원) 중 지도점검 등에 9,436천원을 지출하여 언론광고비 3,436천원 부족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65,965,926	-	△3,436	65,962,49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6,000	3,436	-	59,436

□ 추진결과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홍보비 집행 : '22. 12월

5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송수성 ☎7312 담당 : 김미진 ☎7317

□ 난방비 특별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 시설 23개 유형, 764개소 (붙임-대상시설 현황)
- 지원기준 : 난방비 3개월분 지원하되, 시설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월 최저 1백만원(1,500㎡ 미만 이용시설)에서 최대 10백만원(6,500㎡ 이상 이용시설)
 - 장애인 시설 7종은 이용 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정액 지원

▶ 정액 지원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 (월 300천원) 공동생활가정/주간보호시설/수어통역센터/보조기기센터/피해장애인 쉼터
- (월 500천원) 단기거주시설
-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월 600천원), 보호직업장(월 500천원), 직업적응훈련시설(월 400천원)

□ 예비비 사용금액 및 사유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 사용금액 : 2,559,300천원(764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99개소, 581백만원, 어르신 시설(복지관, 요양시설 등) 59개소 548백만원
 - 장애인시설(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565개소, 1,134백만원, 노숙인시설 41개소 297백만원
- 사 유 : 예기치 못한 기록적 한파 및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설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충분한 난방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하여 난방비 지원

□ 추진결과

- 자치구 및 대상시설 특별지원 난방비 교부 : '23년 2월

(단위 : 개소, 천원)

부서명	시설유형		개소 수	총 소요예산	비고
23개 유형 합계			764	2,559,300	
안심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99	580,500	지방이양시설
어르신복지과	노인주거복지(양로시설)	생활	6	54,000	지방이양시설
	노인여가복지(노인복지관)	이용	25	211,500	지방이양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용	19	57,000	지방이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생활	9	225,00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생활	39	58,500	지방이양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생활	163	146,700	지방이양시설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이용	4	3,6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	24	72,000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이용	1	3,000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생활	1	90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139	209,400	지방이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이용	50	390,000	지방이양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이용	6	52,500	지방이양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이용	7	79,5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109	98,100	지방이양시설
	수어통역센터	이용	22	20,100	
자활지원과	노숙인자활시설	생활	20	129,000	지방이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생활	7	60,000	지방이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생활	2	39,000	지방이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3	30,000	지방이양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용	4	24,000	지방이양시설
	쪽방상담소	이용	5	15,000	

6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운영대 ☎7472 담당 : 안호준 ☎7475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지원대상 : 만6~65세 미만 장애인, 만65세 이상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 예비비 사용금액 및 사유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 사용금액 : 3,125,383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 유 : 겨울철 코로나 19 재유행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금이 증액 변경되어,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확보

□ 추진결과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계획 방침 수립 : '22.12.16
- 사업비 지출 : '22.12.20

7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2133-7310 복지협력팀장: 박진영 ☎7345 담당: 임희주 ☎7346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제1기('07.~'10.), 제2기('11.~'14.), 제3기('15.~'18.), 제4기('19.~'22.)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 ~ 2026)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약자와의 동행' 시정방향을 바탕으로 2개 분야별(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②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마련,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 모니터링 계획, 세부사업계획 등(8개 전략 3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① 서울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추진 전략	촘촘한 서울형 돌봄체계 구축 →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경제적인 서울형 안심생활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복지환경 제공	예방하는 서울형 건강안전망 → 체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형 미래교육과 일자리 → 차별 없는 교육 인프라 제공
-------	--	---	--	---

②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추진 전략	자치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 위기가구 발굴 및 부적정 수급 방지	자치구 역량강화 ↑ 구(區) 교육, 컨설팅, 가이드라인 개발, 모니터링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 및 구(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자치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촘촘한 돌봄인프라 확대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	---	--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구성내용 : 제5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3년 정책 방향, 복지여건 변화, 세부 사업별 2023년 추진 목표 및 연차 추진계획 등

※ 2개 분야별 추진전략 및 전략목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동일

- 관리계획 : 시행계획 운영 점검 평가, 자치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추진

□ 향후일정

- 제5기 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 제출(보건복지부) : ~ '23.3.
- 사업추진 및 세부사업 모니터링 : '23.4~12월

